

<당헌 개정안> 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제1장 총칙

| 현 행 | 개 정 (案) |
|---|---|
| 제1장 총칙 | |
| <p>제2조(목적)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,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,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통합된 사회,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하며,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2조(목적) 더불어민주당은 <u>공정하고 평등한 사회,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,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사회, 혁신과 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나라,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.</u></p> |

□ 제2장 당원

| 현 행 | 개 정 (案) |
|--|---|
| 제2장 당원 | |
| <p>제5조(구분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 청소년의 정치권리 증진과 정치활동 보장 등을 위해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당원제를 운영한다.</p> <p>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| <p>제5조(구분)</p> <p>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<삭제></p> <p>③ <현행과 같음></p> |

□ 제3장 권리당원 전원투표(신설)

| 현 행 | 개 정 (案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3장 권리당원 전원투표 | |
| <신설> | <p>제14조의2(권리당원 전원투표) ① 권리당원 전원투표(이하 ‘당원투표’로 칭한다.)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투표를 실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 2. 특별당헌의 제정과 개폐 3. 특별당규의 제정과 개폐 |

| | |
|--|---|
| | <p>4. <u>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연서명</u> <u>으로 발의한 안건</u></p> <p>5. <u>중앙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</u> <u>의결로 부의한 안건</u></p> <p>6. <u>기타 당헌, 당규에 따른 당원투표</u></p> <p>③ <u>본 조의 당원투표의 요건과 절차 및 방</u> <u>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u></p> |
|--|---|

□ 제4장 대의기관

| 현 행 | 개 정 (案) |
|---|---|
| 제4장 대의기관 | |
| <p>제20조(권한)</p> <p>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</p> <p>1.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</p> <p>2.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</p> <p>3.~7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8.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·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</p> <p>② 제1항1호의 권한 중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| <p>제20조(권한)</p> <p>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1. <현행과 같음></p> <p>2. <현행과 같음></p> <p>3.~7. <현행과 같음></p> <p>8. <u>당원투표 안건의 부의</u></p> <p>9. <u>당의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</u></p> <p>8.→10.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.</p> <p>③ 제1항제2호의 권한 중 전국대의원대회가 위임한 사항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.</p> |
| <p>제21조(소집)</p> <p>①~②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| <p>제21조(소집)</p> <p>①~② <현행과 같음>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20조제1항제9호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.</p> |

□ 제5장 집행기관

| 현행 | 개정(案) |
|---|---|
| 제5장 집행기관 | |
| <p>제32조(전국위원회) ①성, 세대, 계층 등 사회적 계층 및 부문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·구성한다.</p> <p>1.~9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②<생략></p> | <p>제32조(전국위원회) ①<현행과 같음></p> <p>1.~9. <현행과 같음></p> <p><u>10. 소상공인위원회</u></p> <p>②<현행과 같음></p> |
| <p>제33조(상설위원회) ①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·경제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설치·구성한다.</p> <p>1.~4. <생략></p> <p>5. 미래전환K-뉴딜위원회 <신설 2020.8.28.></p> <p>6.~18.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② <생략></p> | <p>제33조(상설위원회) ①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·경제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설치·구성한다.</p> <p>1.~4. <현행과 같음></p> <p>5. <삭제></p> <p>6.~18.<현행과 같음></p> <p><u>19. 인재위원회</u></p> <p><u>20. 탄소중립위원회</u></p> <p>② <현행과 동일></p> |
| <p>제35조(인재영입기구) 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·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②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의 명칭, 구성, 운영, 영입한 인재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| <p>제35조 <삭제></p> |

□ 제8장 지방조직

| 현행 | 개정(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장 지방조직 | |
| 제59조(독립성 강화) 우리 당은 시·도당의 | 제59조(독립성 강화) |

| | |
|---|---|
| <p>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역분권형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.</p> | <p><본문>→①<현행과 같음></p> |
| <p><신설></p> | <p>②시·도당의 당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 당헌·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 |
| <p><신설></p> | <p>제59조의2(시·도당위원장연석회의)</p> <p>①시·도당위원장연석회의(이하 ‘시·도당연석회의’라 한다)는 지역 현안 및 지방자치·분권과 관련된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이다.</p> <p>②시·도당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대표 2. 최고위원 3. 원내대표 4. 시·도당위원장 5.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<p>③시·도당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률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에 관한 심의 2. 정국 및 당무에 관한 심의 3. 시·도당에 대한 예산 배분에 관한 심의 4.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. 기타 당헌·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<p>④시·도당연석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,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·주재한다.</p> <p>⑤시·도당연석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|
| <p>제65조(권한) 시·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</p> | <p>제65조(권한) 시·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</p> |
| <p><신설></p> <p>1.~3. <생략></p> | <p>1. 시·도당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</p> <p>1.~3.→2.~4. <현행과 같음></p> |

| | |
|---|---|
| 4. 시·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5.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6.~7 <생략> 제67조(위원장) ①~③ <생략> | 4.→5. 시·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5.→6.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6.~7.→7.~8. <현행과 같음> 제67조(위원장) ①~③ <현행과 같음> ④사퇴 등으로 인한 시·도당위원장 궐위 시에는 직무대행 임명 또는 사고당부 확정 전까지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| <신설> ④ <생략> 제69조(운영위원회 권한) ①시·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 1.~5 <생략> | <신설> ④→⑤ <현행과 같음> 제69조(운영위원회 권한) ①시·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 1.~5. <현행과 같음> 6. 시·도당 자치규칙 제·개정안의 발의 |
| 6. 기타 시·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② <생략> 제74조(지역위원장)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하며, 당원이 선출한다. 다만,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| 6.→7. 기타 시·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② <현행과 같음> 제74조(지역위원장) ①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하며, 당원이 선출한다. 다만,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당헌 및 당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지역위원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 |
| <신설> | <신설> |

□ 제9장 윤리심판원

| 현 행 | 개 정 (案) |
|--|--|
| 제9장 윤리심판원 | |
| 제80조(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)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28.>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| 제80조(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) ① <현행과 같음> ② <현행과 같음> |

| | |
|--|---|
| <p>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.</p> <p>③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한다.</p> <p>④~⑤ <생략></p> | <p>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④~⑤ <현행과 같음></p> |
|--|---|

□ 제11장 선거관리

| 현 행 | 개 정 (案) |
|---|--|
| 제11장 선거관리 | |
| <p>제83조(선거관리위원회)</p> <p>①~③ <생략></p> <p>④선거관리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⑤ <생략></p> | <p>제83조(선거관리위원회)</p> <p>①~③ <현행과 같음></p> <p>④선거관리는 <u>최고위원회</u>의 의결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⑤ <현행과 같음></p> |

□ 제12장 공직선거

| 현 행 | 개 정 (案) |
|---|---|
| 제12장 공직선거 | |
| <p>제3절 후보자 추천</p> <p>제89조(시·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)</p> <p>①~③ <생략></p> <p>④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(후보자를 포함한다)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(이하 본조에서 '전략공천위원회'라 한다)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.</p> <p>⑤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 선거구(후보자를 포함한다)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⑥<생략></p> | <p>제2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련기구</p> <p>제87조의2(전략공천관리위원회)</p> <p>(조항이동)→①(현행과 같음)</p> <p>(조항이동)→②(현행과 같음)</p> |

| | |
|--|---|
| <p>⑦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| <p>(조항이동)→③(현행과 같음)</p> <p>[종전 제89조의 제4항,제5항,제7항은 제87조의2로 이동 <2022.8.28.>]</p> |
| <p>제3절 후보자 추천</p> <p>제89조(시·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)</p> <p>①~③ <생략></p> <p>④ <생략></p> <p>⑤ <생략></p> <p>⑥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(후보자를 포함한다)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.</p> <p>⑦ <생략></p> | <p>제3절 후보자 추천</p> <p>제89조(시·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)</p> <p>①~③ <생략></p> <p>(조항이동)→제87조의2①</p> <p>(조항이동)→제87조의2②</p> <p>⑥→④(현행과 같음)</p> <p>(조항이동)→제87조의2③</p> |
| <p>제3절 후보자추천</p> <p>제90조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)</p> <p>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(이하 본조에서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구성한다.</p> <p>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(이하 본조에서 ‘후보자’라 한다)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.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, 세대, 성,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되,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②~⑦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| <p>제2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련기구</p> <p>제87조의3(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)</p> <p>(조항이동)→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(이하 본조에서 ‘비례공천관리위원회’라 한다)를 구성한다.</p> <p>②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.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, 세대, 성,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되,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한다.</p> <p>③비례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 <p>[종전 제90조의 제1항은 제87조의3으로 이</p> |

| | |
|---|---|
| <p>제3절 후보자추천</p> <p>제90조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~⑦ <생략></p> <p>제99조(가산기준) ①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, 장애인후보자(중증장애인에 한한다. 이하 같다), 청년후보자(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에 한한다. 이하 같다)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(득표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를 따른다.</p> <p>1.~3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②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(득표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당규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</p> <p><개정 2019.7.1>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당규 제10호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거나 타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 <개정 2019. 7. 1></p> <p>3. 시·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. <u>이 경우 직무대행은 제외한다.</u></p> | <p>동 <2022.8.28.>]</p> <p>제3절 후보자추천</p> <p>제90조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)</p> <p>(조항이동)→제87조의3①~②</p> <p>②~⑦→①~⑥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9조(가산기준) ①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, 장애인후보자(삭제), 청년후보자(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에 한한다. 이하 같다)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(득표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를 따른다.</p> <p>1.~3. <현행과 같음></p> <p>4.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의 <u>경증장애인은 100분의 10을 가산한다. 이 경우 본 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.</u></p> <p>②<현행과 같음></p> <p>1. <현행과 같음></p> <p>2. <현행과 같음></p> <p>3. 시·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. (삭제)</p> |
| <p>제100조(감산기준)</p> <p>①~② <생략></p> | <p>제100조(감산기준)</p> <p>①~② <현행과 같음></p> |

| | |
|---|---|
| <p>③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,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…<중략>…100분의 25를 감산한다.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한다.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경선 불복 경력자 : 당규 제10호제38조로 정한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. 이 경우 경선 감산은 각급 선거마다 계속 적용한다.</p> <p>2. 탈당 경력자 :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<u>최근 10년</u> 이내에 탈당한 자. 이 경우,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 단,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 <p>3. <생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| <p>③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,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…<중략>…100분의 25를 감산한다.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한다.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/p> <p>1. 경선 불복 경력자 : 당규 제10호제38조로 정한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 <u>(삭제)</u></p> <p>2. 탈당 경력자 :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<u>최근 8년</u> 이내에 탈당한 자. 이 경우,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 단,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 <p>3. <현행과 같음></p> <p><u>④제3항제1호는 당헌 제84조제3항에 따른 제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의 각급 선거마다 계속 적용한다.</u></p> |
|---|---|

□ 제16장 당헌 개정 등

| 현 행 | 개 정 (案)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16장 당헌 개정 등 | |
| <신설> | <p>제112조의2(시행세칙 및 자치규칙) <u>각급 기구의 시행세칙 및 시도당 자치규칙 등이 당헌·당규에 위반하는 경우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, 사무총장이 수정을 지시한다.</u></p> |
| <신설> | <p>제112조의3(비상대책위원회) ①당대표 및 <u>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, 중앙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.</u></p> |

②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,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.

③당헌 제25조제3항제3호에 의거,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중앙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를 관리한다.

④제2항의 권한은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정기 및 임시 전국대의원대회,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 때까지로 한다.
